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사 및 복무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9월 7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118호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사 및 복무 규정 일부 개정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사 및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승진의 제한) 4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대표이사는 승진 대상자에게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여 음주 운전 비위 현황을 자체적으로 파악·관리하여야 한다.

제66조(직위해제)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제78조(포상의 제한)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대표이사는 포상 대상자에게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여 음주 운전 비위 현황을 자체적으로 파악·관리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3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